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적법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

◇ 주요내용

가. 구성 (안 제3조)

- 기재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변경
- 기재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,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변경